

# 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안



파리지사

작성자\_ 하유라



## EU의 친환경 포장 규정의 배경

현재, 유럽인 1인당 만들어내는 포장 폐기물의 양은 연간 180kg이며, 만약 EU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2030년까지 포장 폐기물은 19%,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은 46%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2022년 11월 30일 EU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개정안(Proposal for a Regulation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일명 PPWR)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규정은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대한 EU 수준의 조치를 실행하여, EU 시장의 자원 낭비를 막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포장 사용 및 재활용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이다. 무엇보다, 현재로서는 포장에 대한 규제 방식(라벨링 요구사항, 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의 정의 특정 포장에 대한 출시 규제 등)이 EU회원국들마다 다르고, 지침의 이행 방식 또한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EU수준에서의 통합적인 하나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 유럽인 1인당 연간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



\* EU 지침(directive)은 각 회원국이 지침이행을 위한 국내법 전환이 필요하지만, 규정(regulation)은 국내법 전환과정없이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돼 EU 역내 통일적 규제에 용이

### EU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재활용 비율



## EU 포장 규정의 목표

규정의 목표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 ✓ **2030년까지 모든 포장은 재사용 또는 재활용 가능하게 만들어 순환 경제 촉진**
- ✓ **포장폐기물 발생 방지 및 감소**
- ✓ **수명주기 관리(LSA, Life-cycle approach) 고려**

2030년까지 모든 포장은 다 재활용 가능한 물질로 만들어야 하며, 포장재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 또한 재활용 가능한 물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로, 캡슐커피나 티백 등에도 적용이 되며, 산업, 유통, 서비스 및 가정에서 배출되는 모든 포장 폐기물에도 적용된다.



요약하면 일회용 포장재의 감량 및 재사용·리필 목표가 추가되고 재생원료 의무사용 목표가 강화된 것이다. 감량 및 재사용을 통해서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생원료 사용 비율 확대를 통해 견고한 순환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현재 발표된 내용은 초안이기 때문에 향후 조정이 이뤄질 수 있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새 규정이 공포될 시, 기존의 EU법의 법규 2019/1020 및 지침 2019/904을 보완하며, 법규 94/62/EC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 EU 포장 규정 살펴보기

EU에서는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하고 2035년까지 실질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재활용을 5등급으로 구분해 최하위 등급은 2030년부터 판매가 금지된다.

포장 폐기물은 2030년부터 2040년까지 15%를 줄여야 한다. 신선식품이나 야채에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이 금지된다. 포장재의 재사용 및 리필 목표가 설정돼 2030년부터 테이크 아웃 음료의 경우 20%, 음식 10%, 알코올음료 10%(와인은 5%), 비알코올 음료는 10%의 재사용 및 리필 목표를 충족해야 한다. 온라인 소비에서도 산업계 간 유통 시 재사용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재사용 및 리필 목표는 2040년까지 품목에 따라 최대 3배까지 높아진다.

재생원료 사용 비율도 대폭 상향 조정됐다. 페트병은 2030년부터 30%, 2040년부터 50%, 기타 플라스틱 재질 음료 용기는 2030년부터 10%, 2040년부터 65%, 음료 외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는 2030년부터 30%, 2040년부터 65%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신규 규제안은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상으로 하고, 적용 시점도 기존 2030년에서 2040년 이후로 확장됐다. 재생원료 사용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소비 후 폐기물로 만든 재생원료(PCR)에 한정된다. 공장 등에서 자투리로 나온 깨끗한 폐기물로 만든 재생원료(PIR)가 아니라 소비 후 폐기물로 배출된 것을 재사용해야 재생원료 사용실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다.

## 포장재 물질에 대한 요구사항

포장은 포장재의 구성 요소 또는 그 구성 요소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물질의 존재와 농도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제조되어야 한다. 포장 또는 포장 구성 요소에 존재하는 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납, 카드뮴, 수은 및 육가크로뮴의 농도 수준의 합은 100mg/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화학물질 및 식품법에 따른 제한사항은 여전히 적용된다.

## 재활용 가능한 등급

2030년부터 EU 내 유통되는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와 디자인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모든 포장재는 2030년 1월 1일부터 '재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생산'되어야 하며 2035년 1월 1일부는 대규모로 재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식음료 방문포장용 식기, 온라인 배송상품 포장재 등은 재활용성 디자인 기준 (Design for Recycling)에 따라 A~E 등급으로 평가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생산 기준 및 규모에 따른 재활용 가능성 규제 사항은 향후 법률을 통해 확립될 예정이다.

## 플라스틱 포장재에 사용되는 재활용 플라스틱 최소 함량

2030년부터는 플라스틱 포장재에 의무로 사용되어야 하는 재활용 플라스틱의 최소 함량이 적용되게 된다. 규정에 따르면 1차는 2030년부터, 2차는 204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플라스틱의 분류에 따라 최소 함량 또한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의약품·의료장비 및 체외 진단 장비의 접촉 민감성 플라스틱 포장재는 해당 의무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 재활용 가능 수치에 따른 등급

**A등급** 재활용 가능 수치가 95% 이상일 경우

**B등급** 재활용 가능 수치가 90% 이상일 경우

**C등급** 재활용 가능 수치가 80% 이상일 경우

**D등급** 재활용 가능 수치가 70% 이상일 경우

**E등급** 재활용 가능 수치가 70% 미만일 경우

### 플라스틱 포장재에 의무로 사용되어야 하는 재활용 플라스틱의 최소 함량

	재활용 플라스틱 최소 함량 (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	재활용 플라스틱의 최소 함량 (2040년 1월 1일부터 적용)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30%	65%
PET를 주성분으로 사용한 접촉 민감성 포장재	30%	50%
PET 이외의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된 접촉 민감성 포장재	10%	50%
기타 플라스틱 포장재	35%	65%

## 전체 포장재에 적용되는 재활용 포장재 가용 함량

재활용 가능 등급과 포장재에 적용되는 재활용 최소 함량이 발표됨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안으로 모든 포장 폐기물 중량의 최소 65%가 재활용되어야 하며, 2030년 12월 31일 안으로는 포장 폐기물 중량의 70%가 재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유리, 플라스틱, 판지, 금속 등 다른 포장재에 대해서도 재활용 성능 등급이 다르게 적용된다.



### 포장재에 의무로 사용되어야 하는 재활용 최소 함량

	재활용 최소 함량 (2025년 5월 31일부터 적용)	재활용 최소 함량 (2030년 12월 31일부터 적용)
플라스틱	50%	55%
나무	25%	30%
철금속	70%	80%
알루미늄	50%	60%
유리	70%	75%
종이 및 판지	75%	85%

## DRS(Deposit and Return Systems): 재활용 보증금 환불 제도

2029년 1월 1일부터는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플라스틱병 및 알루미늄캔 보증금 환불 제도가 EU 회원국 전체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되는 용기는 일회용 플라스틱 병 및 최대 3리터의 금속 음료 용기이며, 와인, 향이 첨가된 와인 제품, 증류주 음료, 우유 및 유제품 포장재는 제외된다. 일회용 유리 음료수 병, 음료수 상자 및 재사용 가능한 포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된다.



\* 출처: Zero Waste Europe



## 재사용 가능한 포장

제품의 패키징은 여러 번 재사용하거나 리필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 사용이 끝날 시 추후 재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 재활용 부문별 예시

포장 종류	2030년 1월 1일까지	2040년 1월 1일까지
포장용 차갑거나 뜨거운 음료	20%	80%
HORECA* 테이크아웃용 즉석식품	10%	40%
맥주, 탄산주류, 발효음료, 증류주를 기본으로 한 음료, 탄산음료, 사이다, 주스	10%	25%
와인(스파클링 와인 제외)	5%	15%
물, 청량음료, 아이스티, 소다 레모네이드	10%	25%

\* HORECA : 호텔과 레스토랑, 카페를 묶어 이르는 말로 케이터링 산업 혹은 On trade라고도 부른다.

## 바이오 기반·생분해성 및 퇴비화 가능 플라스틱에 대한 정책

규정이 발효되고 2년 안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 포장은 바이오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산업적으로 통제되는 조건에서 퇴비화가 가능해야 한다.

과일 및 채소에  
부착된 스티커 라벨

매우 가벼운 플라스틱 운반용 가방  
(두께 15microns 이하)

차/커피  
봉지와 캡슐

바이오 기반(Biobased) 플라스틱 포장재는 유기 폐기물 및 부산물 원료를 우선 사용하고 바이오매스(Biomass) 포함 비율을 명시해야 하고, 생분해성(Biodegradable) 플라스틱 포장재는 생분해 조건 및 시간 표기가 의무화된다. 퇴비화 가능(compostable) 플라스틱 포장재는 퇴비 품질관리를 위한 수집, 처리 기준 및 시스템을 수립하고 입증된 분야인 티백, 커피필터, 경량 비닐봉지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퇴비화가 의무화되는 플라스틱



## 과대포장 No! 포장 최소화

포장은 무게와 부피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 및 디자인되어야 한다. 특히, 제품의 부피를 증가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예: 이중 포장, 불필요한 층 등) 포장들은 시장에 유통될 수 없다. 또한, 종이 커팅, 에어쿠션, 버블랩(일명 북북이) 등으로 이루어진 '비어있는 공간'을 최소화함으로써, 폐기물을 줄이고 에너지 및 공간을 절약해야 한다.

'제조/포장-운송-최종 판매'의 3단계에서 비어있는 공간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금전적 및 환경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또한, 각 EU회원국들은 1인당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5%, 2035년까지 10%, 2040년까지 15% 줄여야 한다.

##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될 예정인 포장재

특정 포장 형식 사용에 대한 제한이 적용될 예정이며, 아래와 같은 일회용 포장은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캔, 통, 냄비를 함께 묶는 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포장

1.5kg 미만의 신선한 과일 및 채소 포장

(HORECA) 개별 부분/1회 제공량 (예: 조미료, 소스, 설탕 및 조미료)에 사용되는 포장

###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될 예정인 포장재들



## 포장에 대한 라벨링 통일

규정 시행일로부터 3년 반이 경과한 후, 판매 및 분류 포장에는 포장재의 재질 성분을 표시하는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2028년 1월 1일까지 포장 폐기물 수거를 위한 모든 쓰레기통(bins)과 쓰레기 컨테이너(containers) 용기에 동일한 라벨이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재활용 보증금 환불 제도(DRS, Deposit and Return Systems)가 가능한 포장재에 동일한 라벨 및 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규정 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에는, 재사용 가능한 모든 포장재에는 포장재 재사용 라벨과 해당 정보가 포함된 QR 코드(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를 표시해야 한다.

포장의 재사용, 재활용 및 지속가능성 관련해 허가되지 않고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임의의 라벨, 기호 등은 사용이 금지된다.

예 : Green Dot(유럽 재활용 처리 제도)



##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란 폐기물 처리의 책임을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확장하는 것으로 생산자가 지정된 물량의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상응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 제도를 뜻한다.

규정안에 따르면, 식음료 방문포장용 식기, 온라인 배송상품 포장재 등이 재활용성 디자인 기준(Design for Recycling)에 따라 A~E 등급으로 평가됨에 따라, 생산자 책임 재활용 부담금이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새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시 2차 원자재(재활용 플라스틱 원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재활용 원재료 사용 비율에 따라 EPR 부담금 역시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다.



## 해당 규정안에 대한 업계 반응과 우려

유럽 산업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포장재 재사용 의무 사용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포장재 재사용에는 추가적인 운송과 세척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활용보다 환경적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또한, EU 집행위원회의 분석이 재사용률의 차이가 큰 포장 재료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업계에선 환경영향평가가 EU 각국의 다양한 상황과 산업부문, 포장재 종류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여전히 포장재법이 역효과를 낼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럽 식품산업연맹(FDE; Food Drink Europe)은 폐기물 수집 및 분류 인프라와 식품 등급의 재활용 자재 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규정이 시행될 경우 식음료 기업의 비용부담이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 포장재 관련 기업 연합인 EUROOPEN(European Organisation for Packaging and the Environment) 역시 2030년부터 의무화되는 재활용 규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포장재 재활용 및 재사용을 위한 유럽 전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럽플라스틱연합(Plastic Europe)은 이번 개정안이 플라스틱 포장재 산업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플라스틱 포장재의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서는 공공-민간부문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재활용률이 높은 종이 포장재 업계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유럽 제지포장재연합(EPPA, European Paper Packaging Alliance)의 책임자인 마티 란타넨(Matti Rantanen)은 “마치 자동차, 코끼리, 사과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고 이 모든 것을 믹서기에 넣었을 때 결과가 나오는 것과 같다”며 재활용 일회용 종이 포장재가 재사용 포장재보다 환경적 부담이 낮다는 과학적 분석을 제시하며 무조건적인 재사용 의무화를 비판했다.

유럽 골판지제조업체연합인 FEFCO에서도 “종이처럼 재활용률이 90%가 넘는 재료와, 재활용률이 35%인 재료를 동일한 수준에 두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 Insight

이번 개정안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EU 집행위가 강력한 조치를 지지하는 만큼, EU 내 재활용-재사용 포장재 관련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당 개정안을 유럽의회와 관련 여러 위원회에서 검토 중이고, 2024년에는 유럽 의회 선거가 있으므로 입법 과정이 연장될 수 있으며, 수정, 합의 등의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거쳐 법안이 최종 채택된다면, 2025년 즈음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예상이다.

이미 유럽 현지에서는 이미 재활용성을 높인 포장재가 도입되고 있고, 다회용기 서비스 관련 스타트업도 급성장하는 중이다. 이에 맞춰 EU 수출을 진행-고려하는 국내 기업 또한 해당 정책 및 규정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 EU 규정에 부합하는 포장재를 개발 및 제조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